

'21년 외국인력 신청관련 개정내용 및 유의사항 안내

2021. 01. 26(화),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

1. '21년 신규 외국인력 점수제 개정내용

□ 우수기숙사 사업장 우대

- 외국인근로자에게 양호한 기숙사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기존 2.5점에서 5점으로 가점 상향

□ 공휴일 유급휴일 조기전환 사업장 등 우대

- 법정 시행일* 이전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한(시행일 이전 고용허가 신청) 사업장 또는 공휴일 유급휴일 조기전환 사업장**에 대해 2점 가점

* 시행일: ('18.7.1) 300인 이상, ('20.1.1) 50인~300인 미만, ('21.7.1) 5인~50인 미만

** 시행일: ('20.1월) 300인 이상·공공기관, ('21.1월) 30~299인, ('22.1월) 5~29인

- 신규 고용허가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근로시간단축 또는 공휴일 유급휴일 조기전환 사업장으로 확인되면 가점 부여

2. '21년 고용허가 신청관련 유의사항

□ ('21. 2. 1일부터 시행) 고용허가 신청 시 ①사업장 전경 ②근로자가 근무할 장소(작업장 전경) 및 업무 내용(장비가동 모습 등)의 시각자료(사진) 제출 필수

□ ('21. 7. 1일부터 시행(제조업))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 강화 조치에 따라 고용허가 신청 시 기숙사 시설표와 함께 시각자료(사진) 8종* 제출 필수

* ①기숙사 전경 ②침실 내부 ③화장실, 세면 및 목욕시설, ④냉·난방시설 ⑤소방시설

⑥침실, 화장실 및 목욕시설 잠금장치 ⑦수납공간 ⑧채광 및 환기시설 사진 등

근로기준법 시행령 55조 내지 58조의2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자료

□ ('21. 7. 1일부터 시행(제조업)) 기숙사 시설표 상에 주거시설 형태를 '가설건축물(컨테이너, 조립식패널 등), 사업장건물, 기타'로 체크한 경우, '건축물대장' 또는 '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'* 제출 필수

* '건축물대장(용도:주거,기숙사 등)' / '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(용도:주거시설(숙소))'

※ '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' 관련, 지자체 도시건축과에 문의

- 주거시설 정보가 지자체에 임시숙소로 신고된 가설 건축물인 경우 주거시설 현장 점검 실시 후 충족 시 근로자 배정(점수제 발표 전까지 확인)